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0-179
----------	--------

발의년월일 : 2020. 12. .
발 의 자 : 이민석 의원 외 1명

1. 수정이유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자 제6조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6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로 함.
- 나. 제6조제2항 중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를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를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u>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u></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에 <u>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u></p>	<p>제6조(지도·감독) ① ----- ----- ----- --- <u>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u></p> <p>② ----- ----- ----- <u>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u></p>

【참고자료】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